



**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**  
[시행 2015. 8. 10.] [경기도안산시조례 제1909호, 2015. 8. 10., 제정]

경기도 안산시(복지정책과), 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,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시장의 책무)**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 
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시행계획 수립 등)**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 
1.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 
2.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 
3.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·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 
4.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 
5. 그 밖에 시장이 노숙인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
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·요청할 수 있다.  
④ 제3항에 따라 협조·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 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 
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·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대상 사업)**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 
1.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 
2.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 
3.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·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서비스  
4. 노숙인 등의 자활·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 
5.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

**제6조(노숙인 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·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 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 
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비용의 지원)**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이 설치한 노숙인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지도·감독)**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인권교육)**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

력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비밀누설의 금지)**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